회 의 자 료

2018년도 제2차 공동운영위원회

2018. 10. 31.

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
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

목 차

< 보고안건 >

2017년도 회수·재활용산업 지원방안 추진결과 ···· 3

< 의결안건 >

2019년도 분담금 단가 및 회수·재활용비용 지원 등 결정(안) ····· 11

< 기타사항 >

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단가 차등화 추진 경과 ····· 21

보고안건

2017년도 회수·재활용산업 지원방안 추진결과

의 안 번 호	제1호
보고 연월일	2018. 10. 31. (제2차 공동운영위원회)

보고안건

2017년도 회수·재활용산업 지원방안 추진결과

제 출 자	공제조합 이사장 유통지원센터 이사장
제출 연월일	2018. 10. 31.

1. 보고주문

○ 2017년도 회수·재활용산업 지원방안 추진결과를 원안대로 접수함

2. 보고사유

○ 2017년도에 회수·재활용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 지원방안(재원 포함)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

※ '17년도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(2017.6.30)에서 「2017년도 회수·재활용산업 지원방안」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고함

3. 주요골자

○ **(지원방법)** '17년도 회수·재활용의무 달성 여부와 전년도 대비 회수·재활용실적 달성률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

- 100% 지급 품목(7개) : 회수지원금 / 금속캔, PET병, 발포합성수지, PVC, 용기류·트레이 단일재질, 복합재질 및 필름·시트형
- 80% 지급 품목(2개) : 종이팩, 유리병

※ 지원규모(금액)의 80%를 선금으로 지급 후 전년도 대비 증감과 회수·재활용의무 달성여부에 따라 잔금 지급

○ **(지원결과 및 조치계획)** 총 8,525백만원 중 최종 8,310백만원[주1)] 지급 예정이며, 80% 지급(종이팩, 유리병)에 따른 잔여 재원 215백만원은 재활용부과금 준비금으로 사용[주2)] 예정

- 선금(80%) 6,820백만원은 '17년도 9월에 지급되었으며, 잔금(20%) 1,490백만원은 '18년도 11월에 지급 예정

주1) '17년도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('17.6.30.) 보고 시 당초 재원(8,522백만원)에서 출연금 변동 및 이자분 발생으로 재원 소폭(3백만원) 증가

주2) 추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없을 경우, 잔여 재원은 재활용부과금 준비금으로 사용하기로 함 ('17.6.30., '17년도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)

4. 관련규정 : 해당사항 없음

5. 보고내용 : [붙임] 2017년도 회수재활용산업 지원방안 추진결과

[붙 임]

2017년도 회수·재활용산업 지원방안 추진결과

□ 추진 개요

❍ ‘17년도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(‘17.6.30.)에서 총 8,525백만원*(4개 협회 잔여자산 및 ‘17년도 센터 예비비) 회수·재활용산업 별도 지원 추진

* 공동운영위원회 보고(2017.6.30.) 시 당초 재원(8,522백만원)에서 출연금 변동 및 이자분 발생으로 재원 소폭(3백만원) 증가

□ 지원 방법

❍ ‘17년도 회수·재활용의무 달성 여부와 전년도 대비 회수·재활용실적 달성률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

- **(‘16년도 의무 미달성 품목)** ‘17년도 의무 달성률의 전년도 대비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 ⇒ 종이팩, 유리병, 페트병

지급기준	‘17년도 회수·재활용의무이행 달성률			
	전년대비 하락	전년대비 동일	전년대비 증가	‘17년도 의무달성
지원금 지급비율	**80%**	90%	**100%**	추가 인센티브
해당품목	**종이팩, 유리병**		**페트병**	

- **(‘16년도 의무 달성 품목)** ‘17년도 의무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⇒ 금속캔, 발포, PVC, 용기류·트레이 단일재질, 복합재질 및 필름·시트형

지급기준	‘17년도 회수·재활용의무이행 달성 여부	
	미달성 (달성률 100% 미만)	**달 성** (달성률 100% 이상)
지원금 지급비율	**80%**	**100%**
해당품목		**금속캔, 발포, PVC, 용기류·트레이 단일재질, 복합재질 및 필름·시트형**

□ 지원결과 및 조치계획(안)

◈ 100% 지급 품목(7개) : 페트병, 금속캔, 발포합성수지, PVC, 용기류·트레이 단일재질, 복합재질 및 필름·시트형 / 회수지원금

◈ 80% 지급 품목(2개) : 종이팩, 유리병

❍ 총 8,525백만원 중 최종 8,310백만원 지급 예정이며, 80% 지급에 따른 잔여 재원 215백만원은 재활용부과금 준비금으로 사용* 예정

- 선금(80%) 6,820백만원은 '17년도 9월에 지급되었으며, 잔금(20%) 1,490백만원은 '18년도 11월에 지급 예정

* 추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없을 경우, 잔여 재원은 재활용부과금 준비금으로 사용하기로 함 ('17.6.30., '17년도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)

[단위 : 백만원]

구 분		지원비율※ (%)	지원금 예산 (A)	'17년도 선금(B) (A*80%)	의무달성률(%)		'18년도 잔금(C) (A*20%)	총 지급액 (D=B+C)	잔여 재원 (A-D)
					'16년도	'17년도			
합 계		**100**	**8,525**	**6,820**			**1,490**	**8,310**	**215**
회수지원금		16.4	1,394	1,115	123.8	124.5	279	1,394	
종 이 팩		2.9	246	197	73.2	64.2	0	197	49
유 리 병		9.7	831	665	90.1	85.2	0	665	166
금속캔	철 캔				104.9	107.3			
	알루미늄캔				95.7	99.3			
	소 계	13.3	1,130	904	101.2	103.8	226	1,130	
페트병	단일무색				97.2	96.6			
	단일유색				95.2	102.3			
	복합재질				123.1	100.0			
	소 계	22.5	1,918	1,535	97.8	98.6	384	1,919	
발포합성수지		6.0	513	410	120.8	125.3	102	512	
P V C		0.4	30	24	100.7	100.4	6	30	
기타 합성수지	용기류·트레이 단일재질	12.0	1,024	819	117.4	128.0	205	1,024	
	복합재질 및 필름·시트형	16.9	1,439	1,151	159.4	150.0	288	1,439	

※ '17년도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 접수사항('17.6.30) : 품목별 지원비율은 센터에서 회수·재활용사업자와 협의·조정하여 그 결과를 조합에 알리기로 함 ⇒ **품목별 회수·재활용 위원회에서 각각 제시한 기준을 산술평균으로 반영하여 배분**키로 결정·통보('17.12.11)

의결안건

2019년도 분담금 단가 및 회수·재활용비용 지원 등 결정(안)

의 안 번 호	제1호
의결 연월일	2018. 10. 31. (제2차 공동운영위원회)

의결안건

2019년도 분담금 단가 및 회수·재활용비용 지원 등 결정(안)

제 출 자	공제조합 이사장 유통지원센터 이사장
제출 연월일	2018. 10. 31.

1. 의결주문

○ 2019년도 포장재의 회수·재활용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분담금 단가 및 회수·재활용비용 지원 등 결정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2. 제안사유

○ 재활용의무생산자가 2019년에 조합에 납부할 분담금 단가, 조합이 회수·재활용을 위탁하는 센터에 지원할 회수·재활용 비용 등에 대하여 심의·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골자

○ 2019년도 분담금 단가는 회수·재활용비용*에 재활용부과금 준비금 및 운영비(조합, 센터)를 감안하여 산정함

*「회수·재활용시장 연동형 분담금 단가 산정체계(2017년도)」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

○ 또한, 분담금의 운영계획과 분담금 및 지원금의 집행내역 조정, 운영비 사용내역 처리, 정산금 사용방법 등 분담금의 세부 운용방안을 정함

4. 관련규정

ㅇ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, 환경부고시 제2016-52호에서 분담금 단가 및 회수·재활용비용 등을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

ㅇ 조합 정관 제47조 및 사업운영규정 제13조에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·재활용비용 등을 지원토록 규정

5. 의결내용 : [붙임] 2019년도 분담금 단가 및 회수·재활용비용 지원 등 결정(안)

[붙 임]

2019년도 분담금 단가 및 회수·재활용비용 지원 등 결정(안)

1. 분담금 단가(안)

[단위 : 원/kg, 톤/년, 백만원]

구 분		분담금 단가	재활용의무량(예상)	분 담 금
합 계			**1,291,435**	**195,793**
금속캔	철 캔	88	91,008	8,009
	알 루 미 늄 캔	133	83,457	11,100
	소 계		**174,465**	**19,108**
유리병	유 리 병	37	**324,514**	**12,007**
종이팩	종 이 팩[주]	215	**23,817**	**5,121**
페트병	단 일 무 색	147	196,970	28,955
	단 일 유 색	239	57,811	13,817
	복 합 재 질	356	10,431	3,713
	소 계		**265,212**	**46,485**
발포 합성 수지	전 자	66	15,790	1,042
	가공, 농산물, 의약품	76	14,113	1,073
	기타(EPP, EPE 등)	252	2,356	594
	소 계		**32,259**	**2,708**
P S P		295	**5,092**	**1,502**
P V C		1002	**3,220**	**3,226**
기 타 합 성 수 지	용기류·트레이 단일재질	100	214,534	21,453
	복합재질 및 필름·시트형	339	248,322	84,181
	소 계		**462,856**	**105,635**

주) 2019년도 종이팩의 의무율이 분리(살균팩, 멸균팩) 고시 될 경우, 연구용역 결과(회수·재활용시장 연동형 분담금 단가 산정체계(2017년도))를 토대로 조합과 센터가 단가 조정을 협의하여 결정·운영하고, 그 결과를 차기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함

2. 지원금 단가 및 지급(안)

[단위 : 원/kg, 톤/년, 백만원]

구 분		지원금 단가	재활용량(예상)	지원금(회수지원금)	
합 계			**1,291,435**	**173,207**	**(64,676)**
금속캔	철 캔	79	91,008	7,190	
	알 루 미 늄 캔	117	83,457	9,764	
	소 계		**174,465**	**16,954**	**(16,954)**
유리병	유 리 병	31	**324,514**	**10,060**	
종이팩	종 이 팩	170	**23,817**	**4,049**	**(4,049)**
페트병	단 일 무 색	129	196,970	25,409	(4,333)
	단 일 유 색	212	57,811	12,256	(1,503)
	복 합 재 질	319	10,431	3,327	(271)
	소 계		**265,212**	**40,993**	**(6,108)**
발포 합성 수지	전 자	59	15,790	932	
	가공, 농산물, 의약품	68	14,113	960	
	기타(EPP, EPE 등)	226	2,356	532	
	소 계		**32,259**	**2,424**	
P S P		264	**5,092**	**1,344**	
P V C		803	**3,220**	**2,586**	
기 타 합 성 수 지	용 기 류 · 트 레 이 단 일 재 질	90	214,534	19,308	(4,291)
	복 합 재 질 및 필 름 · 시 트 형	304	248,322	75,490	(33,275)
	소 계		**462,856**	**94,798**	**(37,566)**

3. 분담금 운용계획(안)

[단위 : 억원]

구 분	수 입	지 출				
	분담금	지원금	부과금 준비금 등*	운영비		
				소계	조 합	센 터
금 액	1,958	1,732	50	176	76	100

* 부과금준비금 등이라 함은 회수·재활용의무 미달성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위한 준비금과 의무생산자의 출고·수입실적 증감에 따른 분담금 정산 준비금으로써 재활용부과금 준비금 중 25억원은 최근 3년간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거나 부과가 예상되는 6개 포장재(알루미늄캔, 유리병, 종이팩, 페트병 단일무색 및 단일유색, PVC)에서 우선 부담하고, 나머지 25억은 모든 포장재에서 분담함

4. 세부 운용방안

○ 분담금 및 지원금은 공동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범위 안에서 조합과 센터가 집행 상 필요한 부분을 협의(필요 시 실무협의회 개최)하여 조정·시행할 수 있음

- 다만, 지원금은 이번 공동운영위원회(2018.10.31)에서 결정된 포장재별 지원금 범위 안에서 센터 이사장이 조정·시행할 수 있음

○ 운영비는 공동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과 센터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, 법인 감독기관의 지도·감독에 따름

ㅇ 분담금 및 지원금 등의 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정산금은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용함

- 조합과 센터 간 지원금 등의 정산은 회수·재활용의무이행실적 등을 검토하여 실시함
- 다만, 조합과 센터의 운영비 정산금은 각 기관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사용하며, 공동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

ㅇ 재활용의무량(예상) 또는 재활용량(예상)이 변경되어 분담금 또는 지원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합과 센터간의 “회수·재활용사업 위·수탁계약” 으로 조정·시행 할 수 있음

ㅇ 재활용부과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합과 센터가 50%씩 분담하되, 그 세부방법은 “회수·재활용사업 위·수탁계약” 에서 정함

< 기타사항 >

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단가 차등화 추진경과

□ 추진 배경

❍ 의무생산자가 사용하는 포장재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로 개선토록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의 방안 마련

□ 추진 경과

❍ 환경부 연구용역 진행 중 ('18.6~11, 서울대학교)

- 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평가 및 기준 준수 의무화와 함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에 대한 분담금 단가 차등화 방안 마련

□ 주요 내용

❍ 포장재별 재질·구조 적용대상 : 분담금 단가 차등화 재질·구조 등

❍ 분담금 단가 차등화 적용방안 : 업무프로세스 및 적용방법 등

❍ 중·장기 추진계획(안) : 연차별 추진 로드맵 등

□ 향후 추진계획(안)

❍ 분담금 단가 차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('18.11~12)

❍ 공동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('18.12)

-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단가 차등화 추진계획(안)